

박형준 / 3~4월 / 기초GS+ / 11회

| 수강번호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항 총점 | 석차 | 상위% | 가독성 평점 | 응시인원 |
|--------|------|------|------|------|-------|----|--------|--------|------|
| 515529 | 24 | 16 | 0 | 0 | 40 | 1 | 0.91% | 5 | 110 |
| 515740 | 24 | 15 | 0 | 0 | 39 | 2 | 1.82% | 6 | |
| 515470 | 22 | 16 | 0 | 0 | 38 | 3 | 2.73% | 5 | |
| 514114 | 23 | 14 | 0 | 0 | 37 | 4 | 3.64% | 5 | |
| 515726 | 26 | 10 | 0 | 0 | 36 | 5 | 4.55% | 4 | |
| 515335 | 24 | 11 | 0 | 0 | 35 | 6 | 5.45% | 5 | |
| 515446 | 22 | 13 | 0 | 0 | 35 | 6 | 5.45% | 5 | |
| 515531 | 22 | 13 | 0 | 0 | 35 | 6 | 5.45% | 5 | |
| 515450 | 23 | 11 | 0 | 0 | 34 | 9 | 8.18% | 4 | |
| 515662 | 22 | 12 | 0 | 0 | 34 | 9 | 8.18% | 3 | |
| 515524 | 27 | 7 | 0 | 0 | 34 | 9 | 8.18% | 5 | |
| 515366 | 24 | 9 | 0 | 0 | 33 | 12 | 10.91% | 5 | |
| 515393 | 21 | 12 | 0 | 0 | 33 | 12 | 10.91% | 4 | |
| 515462 | 23 | 10 | 0 | 0 | 33 | 12 | 10.91% | 5 | |
| 515512 | 18 | 15 | 0 | 0 | 33 | 12 | 10.91% | 4 | |
| 516079 | 21 | 12 | 0 | 0 | 33 | 12 | 10.91% | 5 | |
| 515437 | 21 | 11 | 0 | 0 | 32 | 17 | 15.45% | 6 | |
| 515456 | 23 | 9 | 0 | 0 | 32 | 17 | 15.45% | 4 | |
| 515457 | 22 | 10 | 0 | 0 | 32 | 17 | 15.45% | 4 | |
| 515516 | 22 | 10 | 0 | 0 | 32 | 17 | 15.45% | 5 | |
| 515614 | 21 | 11 | 0 | 0 | 32 | 17 | 15.45% | 4 | |
| 515379 | 21 | 10 | 0 | 0 | 31 | 22 | 20.00% | 4 | |
| 515523 | 23 | 8 | 0 | 0 | 31 | 22 | 20.00% | 5 | |
| 515947 | 25 | 6 | 0 | 0 | 31 | 22 | 20.00% | 6 | |
| 514532 | 22 | 8 | 0 | 0 | 30 | 25 | 22.73% | 5 | |
| 515398 | 18 | 12 | 0 | 0 | 30 | 25 | 22.73% | 4 | |
| 515461 | 21 | 9 | 0 | 0 | 30 | 25 | 22.73% | 5 | |
| 515527 | 23 | 7 | 0 | 0 | 30 | 25 | 22.73% | 5 | |
| 515539 | 21 | 9 | 0 | 0 | 30 | 25 | 22.73% | 5 | |
| 515564 | 22 | 8 | 0 | 0 | 30 | 25 | 22.73% | 4 | |
| 516005 | 24 | 6 | 0 | 0 | 30 | 25 | 22.73% | 5 | |
| 516043 | 19 | 11 | 0 | 0 | 30 | 25 | 22.73% | 6 | |
| 516047 | 19 | 11 | 0 | 0 | 30 | 25 | 22.73% | 4 | |
| 515421 | 21 | 8 | 0 | 0 | 29 | 34 | 30.91% | 4 | |
| 515459 | 19 | 10 | 0 | 0 | 29 | 34 | 30.91% | 4 | |
| 515479 | 20 | 9 | 0 | 0 | 29 | 34 | 30.91% | 4 | |
| 515514 | 21 | 8 | 0 | 0 | 29 | 34 | 30.91% | 4 | |
| 515546 | 19 | 10 | 0 | 0 | 29 | 34 | 30.91% | 5 | |
| 514504 | 20 | 8 | 0 | 0 | 28 | 39 | 35.45% | 4 | |
| 515354 | 21 | 7 | 0 | 0 | 28 | 39 | 35.45% | 4 | |
| 515355 | 19 | 9 | 0 | 0 | 28 | 39 | 35.45% | 5 | |
| 515370 | 18 | 10 | 0 | 0 | 28 | 39 | 35.45% | 4 | |
| 515382 | 21 | 7 | 0 | 0 | 28 | 39 | 35.45% | 5 | |
| 515420 | 20 | 8 | 0 | 0 | 28 | 39 | 35.45% | 3 | |
| 515464 | 20 | 8 | 0 | 0 | 28 | 39 | 35.45% | 5 | |
| 515466 | 21 | 7 | 0 | 0 | 28 | 39 | 35.45% | 5 | |
| 515483 | 22 | 6 | 0 | 0 | 28 | 39 | 35.45% | 5 | |
| 515486 | 23 | 5 | 0 | 0 | 28 | 39 | 35.45% | 5 | |
| 515510 | 21 | 7 | 0 | 0 | 28 | 39 | 35.45% | 4 | |
| 515519 | 21 | 7 | 0 | 0 | 28 | 39 | 35.45% | 4 | |
| 515984 | 23 | 5 | 0 | 0 | 28 | 39 | 35.45% | 5 | |
| 516046 | 21 | 7 | 0 | 0 | 28 | 39 | 35.45% | 6 | |
| 515347 | 19 | 8 | 0 | 0 | 27 | 53 | 48.18% | 4 | |
| 515385 | 22 | 5 | 0 | 0 | 27 | 53 | 48.18% | 4 | |
| 515429 | 19 | 8 | 0 | 0 | 27 | 53 | 48.18% | 5 | |
| 515447 | 20 | 7 | 0 | 0 | 27 | 53 | 48.18% | 5 | |
| 515475 | 19 | 8 | 0 | 0 | 27 | 53 | 48.18% | 4 | |
| 515481 | 19 | 8 | 0 | 0 | 27 | 53 | 48.18% | 5 | |
| 515482 | 22 | 5 | 0 | 0 | 27 | 53 | 48.18% | 5 | |
| 515563 | 23 | 4 | 0 | 0 | 27 | 53 | 48.18% | 5 | |

| | | | | | | | | |
|--------|----|----|---|---|----|-----|---------|---|
| 515844 | 23 | 4 | 0 | 0 | 27 | 53 | 48.18% | 5 |
| 515997 | 24 | 3 | 0 | 0 | 27 | 53 | 48.18% | 4 |
| 515458 | 15 | 11 | 0 | 0 | 26 | 63 | 57.27% | 4 |
| 515487 | 20 | 6 | 0 | 0 | 26 | 63 | 57.27% | 5 |
| 515568 | 17 | 9 | 0 | 0 | 26 | 63 | 57.27% | 5 |
| 515569 | 24 | 2 | 0 | 0 | 26 | 63 | 57.27% | 5 |
| 515579 | 24 | 2 | 0 | 0 | 26 | 63 | 57.27% | 6 |
| 515658 | 19 | 7 | 0 | 0 | 26 | 63 | 57.27% | 6 |
| 515659 | 20 | 6 | 0 | 0 | 26 | 63 | 57.27% | 5 |
| 515731 | 22 | 4 | 0 | 0 | 26 | 63 | 57.27% | 4 |
| 515738 | 21 | 5 | 0 | 0 | 26 | 63 | 57.27% | 5 |
| 516082 | 22 | 4 | 0 | 0 | 26 | 63 | 57.27% | 5 |
| 519401 | 17 | 9 | 0 | 0 | 26 | 63 | 57.27% | 5 |
| 514398 | 17 | 8 | 0 | 0 | 25 | 74 | 67.27% | 4 |
| 515403 | 20 | 5 | 0 | 0 | 25 | 74 | 67.27% | 5 |
| 515492 | 18 | 7 | 0 | 0 | 25 | 74 | 67.27% | 4 |
| 515506 | 22 | 3 | 0 | 0 | 25 | 74 | 67.27% | 4 |
| 515685 | 25 | 0 | 0 | 0 | 25 | 74 | 67.27% | 6 |
| 515913 | 24 | 1 | 0 | 0 | 25 | 74 | 67.27% | 4 |
| 516023 | 19 | 6 | 0 | 0 | 25 | 74 | 67.27% | 4 |
| 516105 | 21 | 4 | 0 | 0 | 25 | 74 | 67.27% | 4 |
| 515417 | 20 | 4 | 0 | 0 | 24 | 82 | 74.55% | 4 |
| 515517 | 20 | 4 | 0 | 0 | 24 | 82 | 74.55% | 5 |
| 515657 | 19 | 5 | 0 | 0 | 24 | 82 | 74.55% | 4 |
| 515739 | 20 | 4 | 0 | 0 | 24 | 82 | 74.55% | 4 |
| 515444 | 23 | 0 | 0 | 0 | 23 | 86 | 78.18% | 5 |
| 515509 | 23 | 0 | 0 | 0 | 23 | 86 | 78.18% | 6 |
| 515548 | 16 | 7 | 0 | 0 | 23 | 86 | 78.18% | 5 |
| 515572 | 18 | 5 | 0 | 0 | 23 | 86 | 78.18% | 5 |
| 515650 | 21 | 2 | 0 | 0 | 23 | 86 | 78.18% | 4 |
| 515674 | 16 | 7 | 0 | 0 | 23 | 86 | 78.18% | 5 |
| 516035 | 23 | 0 | 0 | 0 | 23 | 86 | 78.18% | 6 |
| 515369 | 22 | 0 | 0 | 0 | 22 | 93 | 84.55% | 4 |
| 515409 | 22 | 0 | 0 | 0 | 22 | 93 | 84.55% | 5 |
| 515480 | 16 | 6 | 0 | 0 | 22 | 93 | 84.55% | 6 |
| 515643 | 17 | 5 | 0 | 0 | 22 | 93 | 84.55% | 4 |
| 515670 | 15 | 7 | 0 | 0 | 22 | 93 | 84.55% | 3 |
| 515504 | 22 | 0 | 0 | 0 | 22 | 93 | 84.55% | 6 |
| 515373 | 17 | 4 | 0 | 0 | 21 | 99 | 90.00% | 4 |
| 516125 | 16 | 5 | 0 | 0 | 21 | 99 | 90.00% | 5 |
| 515378 | 15 | 5 | 0 | 0 | 20 | 101 | 91.82% | 4 |
| 515440 | 12 | 8 | 0 | 0 | 20 | 101 | 91.82% | 4 |
| 515664 | 19 | 0 | 0 | 0 | 19 | 103 | 93.64% | 6 |
| 515535 | 16 | 2 | 0 | 0 | 18 | 104 | 94.55% | 4 |
| 515734 | 16 | 2 | 0 | 0 | 18 | 104 | 94.55% | 5 |
| 515846 | 16 | 2 | 0 | 0 | 18 | 104 | 94.55% | 5 |
| 516051 | 17 | 1 | 0 | 0 | 18 | 104 | 94.55% | 5 |
| 515679 | 12 | 3 | 0 | 0 | 15 | 108 | 98.18% | 6 |
| 515491 | 10 | 4 | 0 | 0 | 14 | 109 | 99.09% | 5 |
| 515672 | 10 | 2 | 0 | 0 | 12 | 110 | 100.00% | 5 |

| | |
|---|------------|
| 박형준/3~4월/기초GS Plus/11회/1번 | 채점자 |
| | 김시연 |
| <p>1. 전반적인 총평</p> <p>침해와 관련된 총론 문제였습니다. 각 설문별 배점이 그리 높지 않아서 다들 분량은 다 채워주셨지만, 논점을 잘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1),(2) 설문에서 '특허권의 침해라고 할 때'라고 이미 상황이 주어져 있으므로, 따로 침해 판단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별 배점이 작기 때문에 침해판단을 해주시면 조치에 대한 분량이 적어져서 점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침해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침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오히려 대비를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조문 목차를 펴시고 대략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만 빠르게 파악해서 최대한 많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2] 설문(3)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1) 권리남용의 항변과 (2)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당연무효나 권리범위 부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해주신분들도 있고, 불가능한 사유는 생략하고 가능한 조치만 적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분량 및 논거를 타당하게 적어주신 경우, 두 경우 모두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조치에 대하여 적어주시고 각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야하는 문제에서는, 목차에 (긍정,부정) 혹은 (적극,소극)을 기재해 주시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p> <p>[3] 설문(4) 진보성 부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소송 중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정정의 재항변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은 소송에서 을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하였지만, 소송 외 조치로 정정심판을 기재해 주신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정 점수를 부여하였지만 주의해 주세요.</p> | |

또한, 분할출원/변경출원 등을 기재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해당 사안은 이미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시기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도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주논점은 아니기에, 많은 점수를 드리기는 힘들었습니다.

3. 소결

배점이 적고 쓰라는 것이 명확하여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문제1의 경우, 모든 설문이 조치를 검토하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각 조치를 모두 목차로 빼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 | |
|---|------------|
| 박형준/3~4월/기초GS Plus/11회/2번 | 채점자 |
| | 김시연 |
| <p>1. 전반적인 총평</p> <p>침해에 대한 조치 관련 문제였습니다. 각 설문별로 주의해야할 논점은 (1) 제조와 보관의 차이 (2) 존속기간 만료 된 특허권의 손해배상청구/침해금지청구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찾아서 써주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점을 캐치하시고 이를 드러나게 써주시면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1) 제조는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만, 보관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신분들이 많았습니다. 제조에 대해서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죄 등을 물을 수 있지만 보관에 대하여는 침해가 아니므로 위 사항을 구하기 어렵고, 대신 침해예방청구가 가능한지만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행위가 나타나는 사안에서는 각 행위를 목차로 빼서 결론까지 판단 해주시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p> <p>[2] 설문(2) 존속기간 관련하여, 만료 후에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침해금지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배점이 10점이므로 목차만 빼서 내용만 적어주시기보다는 적절하게 판례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3. 소결</p> <p>간혹, 목차 제목이 너무 길거나 대목차만 뽑아주시고 그 이하 내용은 줄글형식으로 기재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회차 1번 문제처럼, 조치 및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에서 그러한 기재 방식은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2번 문제처럼, 각각의 사안에서 비교할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은 그러한 차이점을 목차에서 표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안 구성하실 때, 문제가 물어보는 바의 특성에 맞게 목차 구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해주세요.</p> | |

비밀의 수호를 강요당한 비밀 A+B+C를

①은 비밀 ~~비밀의 수호를 강요당한 비밀 A+B+C를~~ 임의로 선 (예: 판매) 하여 비밀의 비밀의 보호에 속한다. ② 은 이를 다루기 ~~(2) 특허권~~ 위해 "특수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허권 하의 경우

비밀 특허권이 하위인 "특수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상 복원불가능도 비밀 특허권은 비밀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다.

2. 정보의 타당성 여부

1) ~~특수권~~

은 비밀 특허권은 특허권으로 인정되어 인정받은 선 중 일부만 인정된다.

(2) 특허권, 특허권 양수

비밀에 특허권을 받고 특허권을 양수 하는 특허권은 인정된다.

(3) 특허권 (특1012) 및 특허권 취득권 (특1382)

특권이 되어 양수 또는 양수하면 본권은 인정된다.

(4) 특허권-특권

특권으로 인해 특허권은 인정된다.

(5) 특허권 양수권, 특허권, 양수권

비밀 특허권의 양수권은 특허권 양수권으로 인정되고, 양수권은 특허권에 의해 인정된다.

II. 수문(3)

1. 특허권 행사 강도 - "권보행 위반"

특허 권리자로서 권보행 위반 | 및 권보행 2의 개념으로 "권보행" 위반의 하위 개념으로 판단된다.

2. 당연 무효의 행위 여부 (소극)

(1) 취지

① 특허권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권리로서 권리자로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
② 특허권이란 특허권자가 특허권자에게서 특허권을 취득한 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
③ 다른 권리자에게
특허권 행위를 할 수 없다.

(2) 취지

특허권자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행위의
무효성 없다.

3. 권리행위 부정 행위 여부 (소극)

(1) 취지

① 특허권이 소극 권리로서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상당없이 권리가
부정되므로 인정된다. ② 다른 권리자에게 부정되는 경우에는 권리가
부정될 수 없다.

(2) 취지

①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권리가 있어 권리행사에 상당없이
권리가 인정된다. ② 신권이 부정되는 경우 권리행사에 무효
행위인 권리행사에 부정된다. ③ 권리행사에 권리가 있어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



4. 권리쌍의 행의 여부 (각주)

1) 총의 취회

① 권리가 있는 자가 다른 권리가 없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양도받은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총의 취회 행위의 취회행위 인양은 권리, 재산권 등이 지양될 수 있다. 취회행위

2) 권리 쌍취회

① 권리 쌍취회, 양자 쌍취회, 권양 쌍취회, 양양 쌍취회 등 여러 가지 쌍취회 종류가 있다. 쌍취회의 권리가 쌍취회 행위의 결과로 양자 쌍취회, 권양 쌍취회, 양양 쌍취회, 양양 쌍취회 등 여러 가지 쌍취회 종류가 있다. ③ 총의 취회 행위는 쌍취회 행위를 할 수 있다.

3) 권도

권도행위, 양도행위, 양도받은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도행위, 양도행위, 양도받은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취회 행위

권도행위의 권도행위는 권도행위, 양도행위, 양도받은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도행위, 양도행위, 양도받은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각주

~~권도~~

1) 취회

취회행위, 양도행위, 양도받은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도행위, 양도행위, 양도받은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도행위, 양도행위, 양도받은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또한 $A+B$ 은 $A+B+C$ 로 ~~작성~~ 작성하면, 비록 수식이
제외되어 있기 같은 반역으로 ~~작성~~ 작성하지 않아도
③ $A+B$ 은 $A+B+C$ 의 ~~작성~~ 작성한 경우
이 또한 $A+B+C$ 의 ~~작성~~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이 때에 ~~작성~~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이다"

(2) 그 밖의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이다"

(3) 결론

- ①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A+B$ 의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② 작성된 경우 1과 2의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③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④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A+B$ (즉 $A+B$ 의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A+B$ 는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작성된 경우.

[문]

[문제-2]

I. 선출 11)

1. 상행위 독립의 원칙

상행위 테두리에서, 각자의 상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2. 제조행위 침해 정도 (3항)

① 침해 여부 판단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② 어느 것이 특허권 침해인지 판단하여 침해 정도를 판단한다. 제조행위라도 이 경우 "침해"이다.

③ 어느 것이 상행위인지 여부 또한 침해 정도를 판단하고 침해 정도에 따라 "고의 침해"로 판단한다.

3. 보관행위 침해 정도 (3항)

보관행위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 (특허법 제 123조 제 3항)에 따라 침해의 정도를 판단한다.

Good

4. "제조"행위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조

(1) 침해행위 행위 (제 123조 제 1항, 2항)

① 특허 X의 상행위에 대해 침해 행위 인정 가능

② 특허 X에 대한 침해 행위 및 상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제조비판행위

① 모든 제조업에 대해 특허 X의 제조행위 인정

② 특허 X에 대한 제조행위 인정 조 123조 2항, 4항은 제조행위



"일단"

② 그 후 기간 중 우선 X는 미지급으로, 법 1283항에 따라 중재판에 대해 중재비용 징수권 "일단"

③ 그 후 우선 X 미지급은 후의 후속된 미지급으로 전제되어 법 1283항에 따라 중재비용 징수권 "일단"

(3) 중재판 권리

같은 항에 따라 재판 후 있다. (법 225조)

5. 보통 행위 관련 후의 권리

(1) 중재 비용 청구

Good

① [해판] 후 항재판이 확정된 때 중재비용에 대한 청구권 발생한다

② [유판] 중재판에 인정된 때 중재비용에 대한 청구권 발생한다

③ [강도] 중재판의 내역에 의거 불응할 때, 재판에 따라 청구한다

4. 후의 권리

그 후 판에 불응한 경우, 항재판에 따라 청구한다 (법 225항)

II. 선출 (2)

1. 甲 후속된 기간 만료 후의

후의 후속된 기간으로 소액하고 (법 883조 1항), 지급권이 된다.

2. 중재 비용 청구

(1) 중속기간 만료 후의 그 후의 판에 행위 (53조)

후속된 판에 따라 인정된 때 후의 중재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

(2) 중속기간 만료 후의 그 후의 미지급 (53조)

Good



[문제-1]

I. 설문(1)

1. 사전적 조치

① 그의 고의입증실익을 위해 甲은 乙에게 서면경고
가능하다.

② 그의, 침해금지가처분, 가압류, 증거보전, 적극적 권리
범위락인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2. 민사적 조치

(1) 침해금지청구

현재의 침해금지를 위해, 乙에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 126조)

(2) 손해배상청구

과거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乙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법 제 128조)

(3) 그 외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3. 형사적 조치

(1) 침해죄 고소

乙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침해죄 고소가 가능하다.

(2) 그 외

몰수,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5



4. 기타 조치

- ① 실시권 설정 ② 특허권 양도 ③ 크로스 라이선스
④ 손해·조정·중재 ⑤ 보상금 청구권 행사도 고려할 수 있다.

II. 설문(2)

1. 특허권 하자 검토

甲의 특허권의 하자를 주장하여 甲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2. 그 외 조치

(1) 실시 중단

더 이상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실시를 중단한다.

(2) 실시허락, 특허권 양수

甲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실시를 허락받거나, 특허권을 양수받을 수 있다.

(3) 재정청구,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청구

甲과 실시권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 요건 하에 재정이나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손해·조정·중재

빠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손해, 조정, 중재가 가능하다.

Ⅱ. 설문(3)

1. 당면무효 주장

(1) 判例

특허법은 별도의 무효심판 절차를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다른 절차에서 특허의 당면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

(2) 사안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특허의 당면무효 주장이 불가하므로 Z은 별도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범위 부정 주장

(1) 判例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결 없이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다만, 진보성 흠결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다.

(2) 사안

Z은 발명한 선행발명을 근거로 甲의 특허권 권리범위가 부정됨을 주장할 수 있다.

3. 권리남용 주장

(1) 判例

① 권리남용 여부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㉔ 법원 심리·판단 거부

침해소송 법원도 권리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전제로서 특허권의 무효사유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사안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도 甲의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乙은 甲의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진보성 흠결도 주장 가능하다.

4. 자유기술의 행방

(1) 判例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 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사안

乙은 자신의 발명 A+B+C 가 선행발명 A와 B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甲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10

IV. 실문(4)

1. 진보성 부정 않는다고 판단 경우(1) 결합방법 진보성 판단방법 判例

- ① 각각 구성요소의 공지여부만을 따져선 안되며,
- ②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관관성을 따진다.
- ③ 이때 결합된 전체구성의 특유한 효과가 함께 고려한다.

(2) 선행문헌 결합요건 判例

- i) 여러 인용발명을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룰 수 있다는 암시·동기가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 ii)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 수준, 기술상식, 해당분야의 기본적과제, 발전경향, 업계의 요구 등을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 결합에 이룰 수 있을 때에만 여러 선행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3) 사안

甲은 위 判例들을 주장하여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진보성 부정 판단 경우(1) 정정의 재항변1) 의의

권리남용 항변 배척위한 특별한사정으로서, 정정발명에 기초하여 무효사유의 부존재 및 권리범위에 속함을 주장

하는 재항변이다.

2) 요건

① 정정의 적법성, ② 무효사유 해소, ③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할 것을 요한다.

3) 종래 하급심 判例

무효사유가 정정으로 ~~해~~ 치유가능한 경우,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

4) 최근 전원합의체 判例 방은

정정심결 재심사유 사건에서, 권리남용 항변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정정으로 무효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재항변할 수 있다.

(2) 사안

甲의 특허발명의 진범부정 하자가 정정으로 치유가능한 경우, 甲은 정정의 재항변이 가능하다. [끝]

[문제-2]

I. 별문(1)

1. 실시행위 독립의 원리

복수 개의 실시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실시행위는 특허권의 효력상 상연독립적이므로, 침해여부 역시 각각 실시행위 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2. 제조행위 침해 여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 목적으로 특허물건을 제조하였더라도, 침해 여부는 주관적 사항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乙의 제조행위는 침해가 성립한다.

3. 보관행위 침해 여부

보관행위는 특허법상 물건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의 보관행위는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제조행위 관련 甲의 조치(1) 침해금지청구

乙의 제조행위는 침해이므로 침해금지 및 침해금의 폐기와 침해예방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乙에게 고의가 인정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3) 침해죄 고소

乙에게 고의가 인정되므로 형사적 조치도 가능하다.

5. 보관행위 관련 甲의 조치

乙이 침해의 준비행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의 우려가 있어 甲은 특허법 제126조 제1항 후단기 따른 침해예방청구가 가능하다.

II. 설문(2)

1. 판매 행위 침해 여부

(1)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효과

특허권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장래로 소멸하며, 특허발명은 자유기술이 된다.

(2) 사안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하였으므로 침해가 아니다.

2. 제조 행위 침해 여부

제조행위는 존속기간 만료 전부터 행하여졌으므로, 침해가 성립한다.

3. 침해금지청구 거부

(1) 判例

이미 소멸된 특허발명에 터잡아 특허침해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

(2) 검토

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므로 判例는 타당하다.

(3) 사안

甲의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乙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는 불가능하다.

4. 손해배상청구 거부

(1) 判例

대법원은 변은종결 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건에서,

위법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바 있다.

(2) 검토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특허권~~ 특허권 소멸의 효과는 강제로 발생하므로, 소멸 전 손해배상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判例는 타당하다.

(3) 사안

甲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5. 침해죄 고소

같은 이유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乙의 제조행위에 대하여 침해죄 고소가 가능하다. [끝]

- 이하 여백 -

문자 가독성 매우 좋음